

퇴직금 중간정산 시행세칙

제정 2011.08.16
개정 2012.03.23
개정 2014.01.21
개정 2014.12.10
개정 2017.04.11
개정 2018.03.01
개정 2020.03.18
개정 2020.06.17
개정 2020.08.25
개정 2023.03.15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성남시청소년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4.1.21.>

제2조(적용대상) 본 세칙은 재단 소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퇴직금이 발생한 임직원 중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20.3.18., 2020.6.17., 2020.8.25.>

제3조(지급사유) 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신청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7.4.11.>

1.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2.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, 이 경우 1회로 한정한다.
3. 본인 및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부담하는 경우
4.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본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
5.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을 통하여 일정나이,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
6.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
7.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
② 제1항 7호의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7.4.11.>

③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4.11.>

제4조(제출서류)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“별표 1” 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부서) 퇴직금 중간정산 운영에 관한 운영부서는 보수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. <개정 2017.4.11., 2020.3.18., 2023.3.15.>

제6조(단위기간) 단위기간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가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요청한 기간을 말하며 그 단위기간은 기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산정방법) ①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산정은 재단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신청 시의 평균임금에 단위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. <개정 2017.4.11.>

② 제1항에서의 평균임금은 재단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

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에 임금인상이 소급되어 적용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.

제8조(신청 및 지급) 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자는 운영부서에 매월 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의거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급사유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신청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23., 2018.3.1.>

③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중간정산후 처리) ① 퇴직금 중간정산후 근속연수 산정은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②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무 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되나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다른 근로조건(승진, 상여, 연차휴가)등은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변동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7.4.11.>

③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일을 기산일로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10조(경과조치)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이 세칙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받은 것으로 하며 세부 적용기준은 해당 중간정산을 받은 때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칙(2011.8.16.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3.23.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4.1.21.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.

부칙(2014.12.10.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4.11.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8.3.1.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3.18.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6.17.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8.25.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3.3.15.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14.1.21., 2014.12.10., 2017.4.11.>

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

1. 신청인 소 속 :
성 명 :
생년월일 :

2.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 (상세히 기재) :

3. 퇴직금 중간정산기간

[년 월 일] ~ [년 월 일]

4. 상기 본인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상기에 명시된 중간정산기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·숙지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합니다.

- 1) 본인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준수·이행하며, 동 세칙 등에 의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- 2) 상기 퇴직금 정산기간에 대하여는 더 이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,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및 퇴직금지급률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숙지하고 있으며, 이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- 3) 첨부로 제출한 서류는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며 서약합니다.

※ 첨부서류 :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귀중